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가.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을 위임범위에 맞게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조례의 조화를 도모하고,

나.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그 적용범위를 위임하여 우리군 조례에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항 삭제 및 수정

- 공유재산 심의회를 생략 가능한 규정 중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 삭제(안 제5조제2항제4호)

- 광석, 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, 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 산정 규정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하도록 하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이에 맞도록 수정함(제30조제1항, 제2항, 제5항)

-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출기준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 근거 없이 대부 건물의 층수에 따라 부지 평가액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현행 상위법령에 맞도록 수정함(안 제31조제3항 ~ 제5항)

나. 상위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그 적용 범위를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

- 개정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7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행정재산 사용·수익 허가시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율을 규정함(안 제32조제5항)

- 개정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일반재산 대부계약시 일반 재산 대부료의 감면율을 규정함(안 제32조제6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,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규제심사 : 2019. 8. 16. 심사완료(기획감사실-8234)

라. 성별영향평가 : 2019. 8. 14. 평가완료(가족지원과-32926)

마. 입법예고 : 2019. 8. 27.~9. 16.(20일간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을 위임 범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,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,

○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항의 삭제와 수정,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・대부시 사용료・대부료를 50%까지 감경 할 수 있는 내용을 위임 범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,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상위법령 위임 범위 및 개정으로 인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능률화로 지방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○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인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시행일인 2019년 6월 5일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시기를 놓쳐 조례를 개정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